

청운학원정관시행세칙

1979. 01. 01 최초제정	2012. 01. 01 부분개정
1981. 12. 12 부분개정	2012. 03. 23 부분개정
1983. 03. 01 부분개정	2012. 07. 22 부분개정
1991. 08. 29 부분개정	2012. 09. 01 전면개정
2008. 03. 31 부분개정	2019. 07. 18. 부분개정
2009. 08. 14 부분개정	2022. 08. 12. 부분개정
2011. 08. 18 부분개정	

제1조(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교법인 청운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정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모든 재산의 관리 책임자는 이사장이 된다. 다만,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 재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관리 보존한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이 교육용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관리 보존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업시행 이전에 그 사업계획에 대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건물 신·증축에 관한 사항
2. 기본 시설의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3. 교육용 토지의 지형 및 형질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 명의로 등록되는 각종 교육용 보통재산의 실패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산의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재산목록 등의 비치) 법인과 학교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2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설치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정관 제27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2.08.12.)
2. 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3. 학교의 시설, 설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의 심의·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휴직교원의 처우) 정관 제43조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휴직교원의 처우는 대학의 교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정년보장교원의 심사) 정관 제47조의2제2항에서 규정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의 교원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명예퇴직) 정관 제47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명예퇴직과 관련한 사항은 대학의 교직원 명예퇴직규정을 준용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실시한다.

제8조(권한의 위임) 법령과 정관 및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정관시행 및

법인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제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대학제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9.07.18.>

부 칙

①(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서기1979. 2.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세칙은 서기1981. 12 .1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세칙은 1983. 3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1991. 9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08. 3. 3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1년 8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2. 01. 01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2. 07. 22 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2. 09. 01 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개정세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시행세칙은 그 효력을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9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세칙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2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